

# 2021년도 단체협약 잠정합의(안)

## 《단체협약서》

### 제11조 【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】 (제2호 개정)

2. 의료원은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 회합 및 행사 등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공가는 연 90일 이내에서 허용하되 다수의 조합원이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유급공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노조활동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### 제26조 【임용】 (조문 변경 및 3항 신설)

3. 신규 임용된 직원의 **호봉 재확정시 재확정된 호봉으로 임금을 재정산 지급 하되, 기본급에 한한다.**

### 제38조 【징계의 종류】 (전부 개정)

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# 1. 중징계

- 1) 파면은 신분을 즉시 해제하며,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.
- 2) 해임은 신분을 즉시 해제하며,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.
- 3)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.
- 4)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.

#### 2. 경징계

- 1)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,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,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
- 2) 견책 :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 또는 경고하고 개전하도록 한다.

② 징계의 보수·수당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# 1. 중징계

- 1) 파면은 파면 이후 보수·수당을 전부 미지급한다.
- 2) 해임은 해임 이후 보수·수당을 전부 미지급한다.
- 3) 강등은 미근무 기간 보수·수당을 전부 미지급한다.
- 4) 정직은 미근무 기간 보수·수당을 전부 미지급한다.

#### 2. 경징계

- 1)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, 총액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(단 시간의 근무수당, 당직수당 등 실비보상적 수당은 제외)

### 제40조 【징계절차】 (제2호 개정)

2.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,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,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.

**제59조 【콜 근무수당】 (제5호 신설)**

5. 의료원은 콜 근무 대기자가 출근 시 콜 교통비로 회당 1만원을 지급한다.

**제82조 【근무복 지급】 (전부개정)**

1. 의료원은 신규 채용된 직원에게는 부서 배치와 동시에 근무복 2벌과 근무화 1켢레를 지급한다.
2. 의료원은 다음과 같이 직원에게 근무복 지급한다.
  - 가. 원무과 : 2년에 1벌(동복, 하복 각각)
  - 나. 간호과 : 유니폼은 1년에 1벌, 가디건 2년에 1벌
  - 다. 영상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물리치료과, 약제과 : 1년에 1벌
3. 의료원은 전 직원에게 근무화를 2년에 1켢레 지급한다. (단, 근무화 1켢레 50,000원 상당)
4. 의료원은 근무복 및 근무화 선정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24

2024. 4. 26. 2024. 4. 26.

## 《별도합의서》

### 1.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(개정)

- 의료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점수를 배정 지급하되, 기본복지점수는 900점 일률 배정한다.(단, 2021년은 110점을 소급 지급하되,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지침에 따른다.)
- 의료원은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서 서귀포지역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복지점수 300점을 2021년에 한하여 지급한다.

### 2. 감정노동 휴가 (신설)

- 의료원은 직원이 고객(환자) 응대 및 진료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발생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1일의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 단,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 3. 직원 건강검진 확대 (신설)

- 의료원은 직원 건강 검진시 기본 검진 항목외 콜레스테롤 검사 등 추가 검진항목을 조합과 별도 협의 한다.

### 4. 병동 등 간호사 근무체계 개선 (신설)

- ① 병동 : N근무시 3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근무표를 편성한다.
- ② 분만신생아실 : E근무시 3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근무표를 편성한다.
- ③ 산후조리원 : N근무시 3명의 근무하도록 간호사, 간호조무사 근무표를 편성한다.
- ④ 응급실 :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D5명, E6명, N5명이 근무하도록 근무표를 편성한다.  
(단,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과 맞물려 7월 이전 시행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다)
- ⑤ 인공신장실 : 복수 진료과 개설 시기와 맞물려 추후 협의하되, 우선 간호사 1명을 증원하여 9명 근무체계가 되도록 한다.(수간호사 포함)
- ⑥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의 시행 시기는 2022년 신규 간호사가 임용되어 실무 적용 기간이 끝나는 '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5. 감염관리실 간호사의 콜 대기시 업무 및 잔업 시간의 48시간 한시적 정액 지급 (신설)

- 2021년 11월분부터 소급 적용 지급

### 6. 응급실 오더리 1명 추가 채용 (신설)

- 공무원 정원(2월예정) 확보 후 시행

### 7. 직원 근무복 세탁

- 직원 근무복 세탁(반입, 반출 등)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


### 8. 응급실 근무 간호사 자동정제분류시스템 사용 업무 금지


2021. 12. 24.

서귀포의료원

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

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

원장 박현수 

지부장 양연준 (인) 

|

양 연 준